

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

2. 개정이유

- 주민 복지 증진,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읍·면·동 새마을회원의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읍·면·동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근거 신설(안 제3조의2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1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자치협력과 주민자치팀)

○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(우 10932)

○ 연락처 : 031)940-4342 / 팩스 031)940-2979 / 이메일 rlaudco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 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